

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5. 1.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 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강화(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함.

나. 직무능력 인정 정보 확대(안 별표 3)

청년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과 사업주자격 취득정보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에 자격정보로 사업주자격 취득정보, 교육이수정보로 해외 교육연수 이력, 경력정보로 해외 일경험 정보를 추가함.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함.

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은행에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가 연계됨에 따라 경력정보로 일경험 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자격증 번호와 개인사업자등록 폐업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함.

마. 법령서식 정비(안 제16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별지 제4호의4서

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2.5센티미터×3센티미터)”를 각각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 별표 1의2 제1호마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인정 유형	인정되는 직무능력
자격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검정형 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2. 「군인사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자격
교육 이수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이수 정보 1. 기능대학 중 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 2.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제10조의3에 따른 교과인정을 받은 교과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4.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직업능력교육 영역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청년 해외 교육연수 과정
훈련 이수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 이수 정보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중 개인별 훈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기능대학 중 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훈련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업교육훈련
경력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정보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군 직무능력증명서에 따른 군 경력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인이 자격 · 교육 · 훈련 · 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취업 · 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 동의 여부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관리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및 관리 업무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1항 · 제3항 ·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 단체의 장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관리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및 관리 업무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1항 · 제3항 ·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성명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과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업태(주업태, 부업태), 사업 업종 (주업종, 부업종), 개업일, 폐업일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관리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및 관리 업무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제공 등)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의2(직무능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
※ 위의 과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과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직무능력 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직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2. 본 인정서는 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인정이 취소됩니다.

■ 자 격

연번	취득 방법	자격명(등급) 자격증 번호	발급 기관	취득 일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코드)	

■ 교 육

연번	교육 유형	과정명	교육 기관	교육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코드)	

■ 훈 련

연번	훈련 유형	과정명	훈련 기관	훈련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코드)	

■ 경 력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연번	사업장 명칭	업종	피보험자격 취득일	피보험자격 상실일	근로·노무제공일수

※ 근로·노무제공일수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2) 사업자등록 정보

연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업태	사업 종목	개업일	폐업일

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군 복무경력

연번	소속	직책	군무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코드)

4) 일경험 정보

연번	유형	사업명	국가	참여 기관(경험 직무)	참여 기간

※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인터넷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본 직무능력 인정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발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

학교명		학과(부)/전공명	
주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상기 대학 학과(부)/전공은 국가직무 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를 아래와 같이 설계·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과 인정 내역				
연번	교과명	학점(시수)	능력단위명(코드)	인정 유효기간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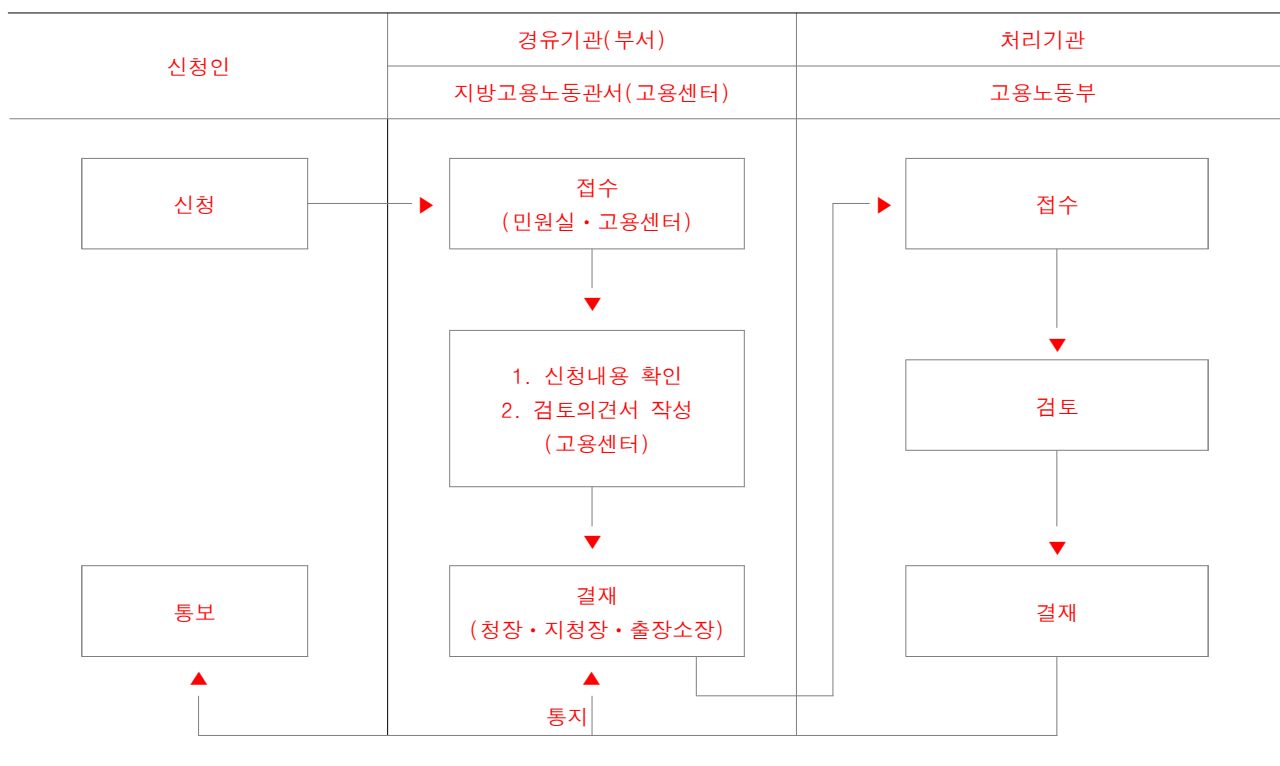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본 법인의 해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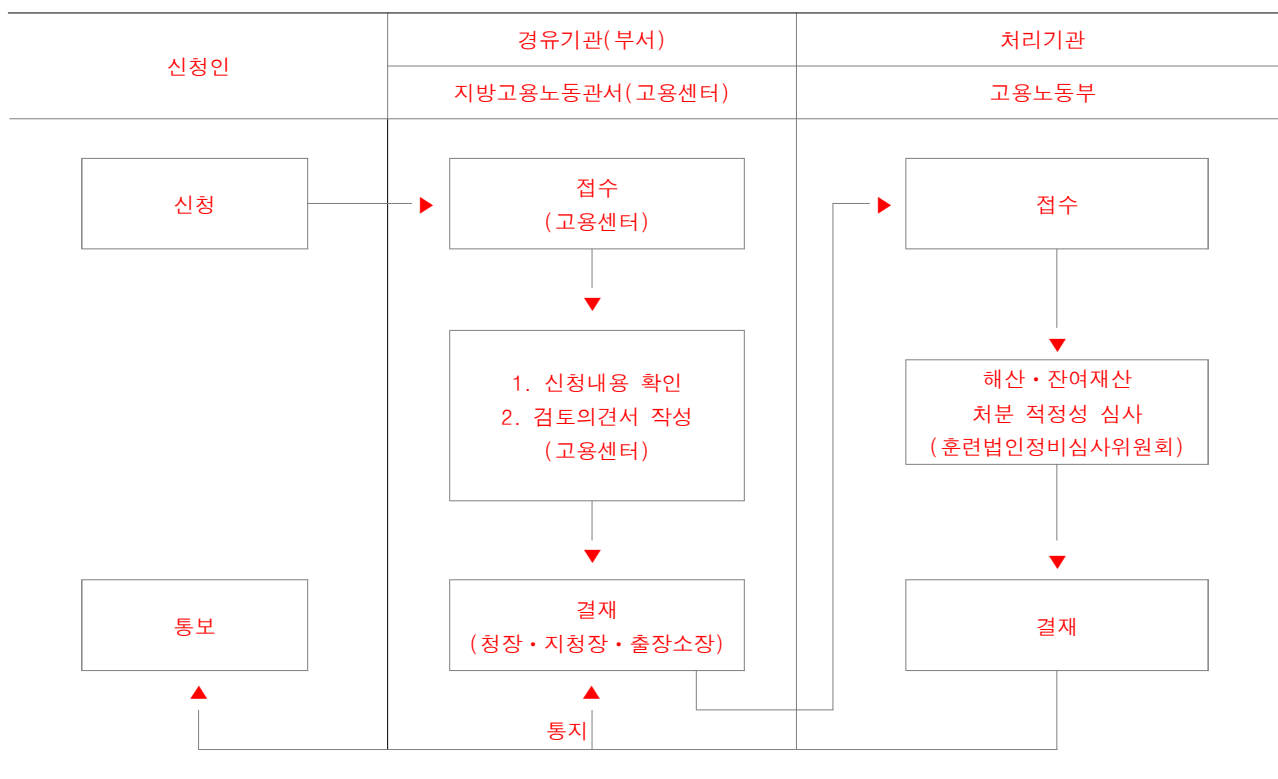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 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자격증 신청직종	교사의 등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각 훈련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 중 아래 ※란에 명칭을 기입한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2,0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위 ※란에 기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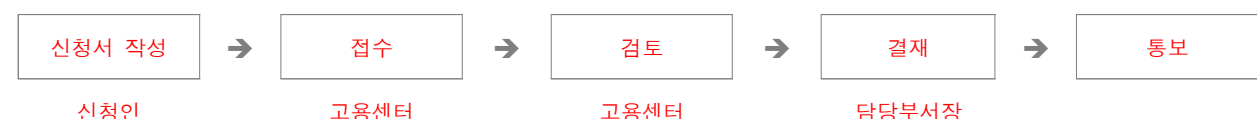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리	발급 여부	[] 발급 [] 미발급		등급			
	미발급사유						
결재	담당자		검토자		부서장		결재일
							. . .

처리절차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성 명:

생년월일:

자격직종 및 등급:

사 진

3.5cm×4.5cm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직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기재사항 변경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증번호		자격증 교부일자	
자격직종		등급	
재발급 신청 사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 기재사항 변경 []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수수료 2,0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수입인지 붙이는 난 (2천원 상당액)
------	---	---

※ 아래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리	재발급 여부	[] 재발급 [] 미발급		등급		
	미발급사유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장 (지청장·출장소장)	결재일 . . .

처리절차



훈련기준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 및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직종			⑦ 직종코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준의 ([] 설정 []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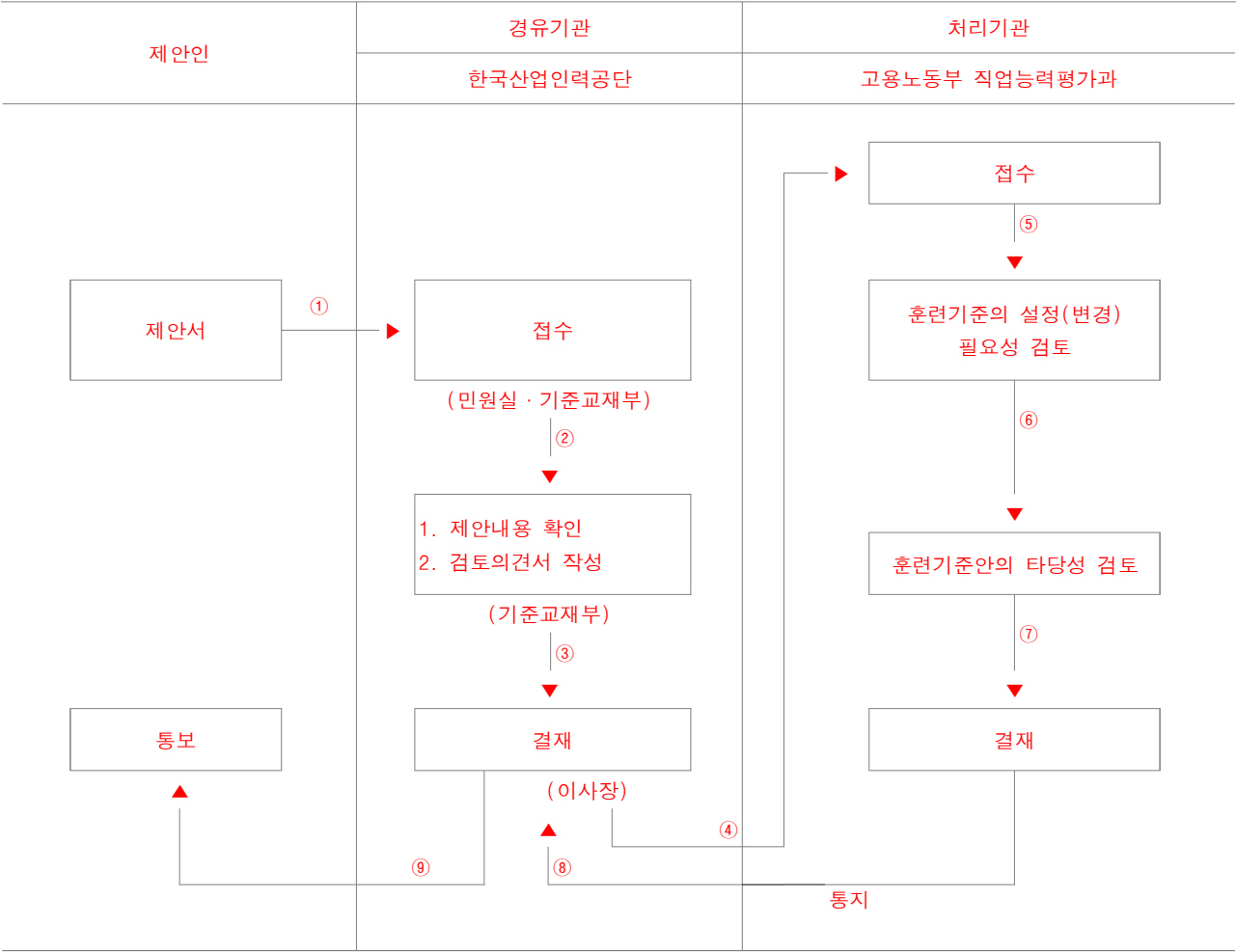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서 1부 2. 훈련기준안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 2. 제안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각각 적습니다.
- 3. 훈련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

사업장 (훈련기관)	① 명칭			
	② 소재지			
훈련생 (근로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	
⑦ 반환대상 금액		원		
⑧ 추가징수액		원		
⑨ 납부할 금액(⑦+⑧)		원		
⑩ 반환명령·추가징수사유		⑪ 납부방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반환·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			
2. 공표 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공표 내용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적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0조의3			
5. 공표원인이 된 사실	○ 명단 공표 기준일(년 월 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	부정수금액	위반 행위	처분일
6. 공표 예정일	년 월 일			
7. 공표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8. 공표 기간	1년			
9. 소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귀 기관)께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 기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4항에 따라 공표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

직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기관	훈련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신고내용		※ 신고대상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신고기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	부정행위 조사	→	조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신청
신고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입금계좌	
	주소	(전화번호 :)				
신고한 부정행위의 내용						
신고일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부정행위의 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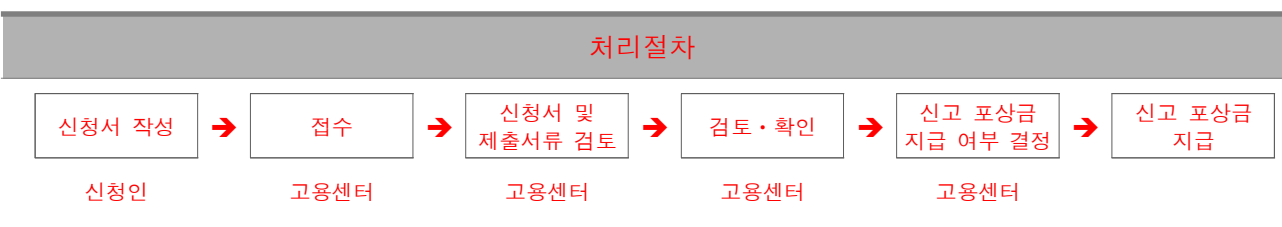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제출서류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6. ----- ----- <u>(3.5센티미터×4.5센티미터)</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	④ ----- ----- ----- ----- ----- ----- ----- -----

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u>2.5센티미터×3센티미터</u>)	----- ----- ----- -----. 1. · 2. (현행과 같음) 4. ----- -----(<u>3.5센티미터×4.5센티미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